

1. 서설

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론소비의 형태는 신문·잡지 등과 같은 ‘구독식’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인터넷신문·포털뉴스 등과 같은 ‘전송식’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모바일의 확산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무지막지한 전파성으로 인해, 디지털 형태를 가진 기사가 일단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그 확산에 대한 언론기관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간단하고 저렴한 디지털 제작 방법으로 인하여 기사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잘못된 기사나 허위 정보, 명예훼손 기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였고,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간 디지털 기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하여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언론기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주체나 표현 형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형태에서는 독자의 오프라인상의 의사표명, 전화 등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의견 표명 주체의 폭이 넓어졌으며, 간단한 의견 표명이라도 댓글, SNS 게시,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매우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시대적 변화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전통적인 2가지 원칙 즉 ‘언론기관의’ +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국가기관 사이의 관할의 공백을 불러일으켰으며, 인터넷을 불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온상으로 만들었고, 언론기사의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지적하신 발제자 양경승 부장판사님의 발표내용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며, 양경승 부장판사님의 발표내용에 더하여 약간의 소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에 일상화될 로봇기자 등에 의한 언론기사 작성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2. 댓글

발제문에는 “기사댓글이 존재하는 인터넷 공간은 앞서 언급한 언론중재법의 확대 적용 기준인 그 공간의 접근성이나 공개성, 저장된 정보의 계속성과 확대·전파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침해적 댓글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해 왔고, 대법원 판례나 학설상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도 자신이 통제관리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통·존속하는 침해적 정보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댓글을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자는 내용이며, 이는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을 언론기관의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활동 주체를 넓히는 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을 인정하자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댓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언론기사의 댓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겠지만,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언론기사에 대하여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댓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언론기사에 대하여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댓글입니다.

전자의 예는 특정 기사에 바로 붙어 있는 댓글, 특정 기사에 대하여 같은 언론사 사이트 내의 자유게시판 등에 있는 댓글 등이 있습니다. 후자의 예는 특정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댓글입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특정 기사 링크를 걸어놓고, 그 밑에 기사 내용을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구별은 용이해 보이지만, 네이버 등의 포털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뉴스서비스에 있는 특정 기사를 누군가 자신이 소속된 네이버 카페에 그대로 옮겨놓고 댓글을 다는 경우를 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구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되는 댓글의 범위를 전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후자까지 넓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넓게 해석하여 후자, 즉 특정 기사에 대하여 다른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댓글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는 경우라면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비평글 전체에서 그 기사의 비중 또는 그 기사와 댓글 사이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포섭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좁게 해석하여 전자의 댓글까지만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포섭시키는 경우라면 전자와 후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왜 전자까지만 포섭시키는 것인지 그 이론적 기반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실적 주장 이외의 표현행위

발제문에는 “사실적 주장, 즉 보도활동 이외의 수단에 의한 법익 침해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법익 침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인 표현행위를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서 인격적 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보도의 개념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개선하여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 등으로 개념정의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에 관하여 기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라는 틀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업무가 보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점점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한 ‘정보 제공 활동’으로 언론보도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언론보도”라는 단어의 개념상 범위는 무제한 넓어져서 광고라든지, 컨퍼런스, 전시회 등도 포섭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보도를 단순히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개념정의하는 것보다는, 언론보도의 수단에 대한 제한을 개념에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검색차단청구권

발제문에는 “새로운 피해구제수단으로서 침해적 정보의 삭제청구권과 접근차단청구권을 언론중재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 침해적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차단의 방법으로서 검색사업자에 대한 검색차단청구권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수단을 확대시켜 검색차단청구권 등을 활용한 접근차단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피해구제수단을 확대시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검색차단청구권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곤잘레스에 관하

여 현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재산강제매각 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거 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서의 검색차단을 명령하였기에 기사의 검색차단은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인 행사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에 대한 조치이지,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기사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기사에 대하여는 이것이 불법정보이므로 그 기사의 원천 삭제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바, 굳이 검색차단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에 대하여 인정할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적법하나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글이 잊혀질 권리의 집중적인 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불법적인 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법행위 관련 법리로 충분히 포섭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게시 당시는 적법했지만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진 기사의 경우, 이는 자칫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알권리 등과 민감하게 엮일 수 있는 관계로 이러한 기사에 대하여 검색차단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 부정적 여론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유럽사법재판소 방식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색차단청구권을 도입할 때는, 검색차단은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에 이 청구권을 도입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지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 포스트휴먼시대의 로봇기자의 문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 적응도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류는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사이보그, 로봇, 개량인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포스트휴먼 사회는 휴먼과 포스트휴먼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로봇기자가 증권이나 스포츠, 날씨 등의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외국의 기사를 이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포스트휴먼 사회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난 정보분석력을 가진 로봇기자가 사람기자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로봇은 기자의

역할 일부를 수행할 것이며, 언론사는 사람기자 대신에 24시간 쉬지 않아도 되는 로봇기자를 채용하여 대량으로 기사를 찍어낼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로봇기자가 등장하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역할이 확대될 것인 이상, 특정 로봇기자가 프로그래밍된 성향이나 오류, 또는 인공지능의 사용에 의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기사나 부정확한 기사를 쓰는 경우 로봇기자를 사용한 언론사의 책임을 어떤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 로봇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 로봇기자의 폐기나 해당 프로그램의 삭제, 성향 또는 오류의 정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제도는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의 언론중재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디지털 시대에는 이에 맞는 언론중재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적으로 ‘언론기관의’ + ‘사실적 주장’이라는 고전적 틀을 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의 관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언론보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색차단 청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섬세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디지털 시대를 이을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연구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